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-976호

도시관리계획(가양·등촌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(안) 열람공고

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·등촌동 일대 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(변경)(안)’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7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3월 26일

서울특별시 장

가. 열람기간 :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(2026. 3. 26. ~ 2026. 4. 9.)

나.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기관

-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(☎02-2133-8399)
- 강서구 균형발전도시국 도시전략과 (☎02-2600-1734), 도시계획과 (☎02-2600-6846)

다.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(변경)(안)
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(변경)

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강서구 가양동 1456번지 일원	976,515.4	증) 92.4	976,607.8	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171호 (1996.6.25.)	
등촌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강서구 등촌동, 가양동 일원	762,759.2	감) 6,492.6	756,266.6	서울특별시고시 제1995-395호 (1996.1.5.)	

2.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(변경) : 게재 생략

※ 세부 구역의 범위, 계획 등은 열람장소 비치 도서 및 도면으로 같음

라. 관계도서

- 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(변경)(안)
- 등촌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(변경)(안)

마. 기타사항

-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열람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서울시 홈페이지 (<http://www.seoul.go.kr>)→서울소식→공고→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에서도 확인 가능)
- 본 계획(안)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,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(☎02-2133-839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